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

I 배경 및 현황

- 최근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 '13.4월 전주 키즈카페에서 4세 여아 사망 등 안전사고 발생
 - 안전사고 증가추세 : '10년 989건 → '13.8월 1,219건(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운영 현황('13.6월 조사결과 총 977개소)
 - (유형) 키즈카페 590개소(60.4%), 트램펄린장 309개소(31.6%) 등
 - (설치지역) 주로 상업지역(49.5%) 및 주거지역(43.1%)에 설치
 - (유기기구 설치) 트램펄린, 미니기차 등 유기기구가 주로 설치됨(4,080개)

II 안전관리 문제점

- 신종 업종으로 여러 부처에 업무가 혼재되어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애로
- 주거지역 등 非상업지역에 설치된 유원시설은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를 받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 ※ (문체부) 유원시설은 건축법상 상업지역내의 위락시설용도로만 설치가능하다고 해석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시 놀이기구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 확인 미흡
 - ※ 영업 신고시 소방점검, 위생교육, 건강진단 관련 증빙자료만 제출

Ⅲ

추진 경과

-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5.9) 결과, 키즈카페 안전관리 관련 입법 추진
- 입법전 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통합안전관리기준 마련·시행('13.6월)
- 키즈카페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9회)
- 안전정책실무회의 결과(11.22), 건축법 시행령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에 「관광진흥법」 상의 ‘기타 유원시설업’ 을 포함, 키즈카페 등을 ‘기타 유원시설업’ 으로 인허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

Ⅳ

안전관리 대책

< 기본방향 >

- ❖ 부처간 기능 분담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
- ❖ 키즈카페 등 신종영업을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으로 인허가 관리
- ❖ 최초 영업신고 단계부터 종합적 안전관리 강화

- 「관광진흥법」 상의 ‘유원시설업’ 으로 인허가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국토부, 문체부)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키즈카페를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문체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추가하도록 개정 (국토부)

-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안전관리 (문체부)
 -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일 1회) 및 기록부 비치
 -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게시, 조명(60럭스 이상) 유지
 - 보험가입, 종사자 안전교육(주 1회), 신규채용 시 사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발생시, 등록관청에 보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식품접객업과 병행하는 키즈카페의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 (식약처)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시 놀이시설 설치여부 현장확인(월 1회) 및 안전 검사 확인증 첨부토록 법령 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
 - 현재 영업장과 타 용도시설을 분리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키즈카페 운영자들이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교육 강화(분기 1회 이상)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8호가목1)가
 - 지자체 식품위생관리부서에서 영업장의 음식, 식재료, 환경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강화(연 2회 이상)

V

후속 조치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완료('14.3.24 시행)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 개정
- (문체부) 유원시설업 인허가 관리지침 시달 / 안전점검·실태조사(매년)
 -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유원시설업 인허가 신고 유도 ('14.1월)
-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신고 서식 등 개정(~'14.9월),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접객업소 점검) 시달

참고 1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현황 [13.7월 지자체 조사결과]

□ 신종 놀이공간 설치현황 : 전국 977개소

계	키즈카페				트램 펄린장	유원 시설	기타 (편의점, 전시장 등)
	소계	키즈카페	실내 놀이터	키즈 테마파크			
977	590 (60.4%)	521 (53.3%)	42 (4.3%)	27 (2.8%)	309 (31.6%)	23 (2.4%)	55 (5.6%)

※ 키즈카페는 주로 실내에서 음식물을 팔면서 어린이에게 놀이제공하는 신종 업종

□ 인허가 현황 : 식품접객업(43.6%) 및 유원시설업(5.5%)으로 신고

시설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식품접객업 신고		
	유원시설업	미신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해당없음**
977	54 (5.5%)	923 (94.5%)	143 (14.6%)	283 (29.0%)	551 (56.4%)

* 용도지역(상업지역), 건축물용도(위락시설)가 맞지 않아 유원시설업 신고없이 영업

** 음식물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신고대상 아님

□ 설치지역 : 주로 상업지역(49.5%) 및 주거지역(43.1%)에 설치

계	상업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관광개발 진흥지구	유원지	관광지	기타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977	484 (49.5%)	421 (43.1%)	21 (2.1%)	6 (0.6%)	2 (0.2%)	2 (0.2%)	41 (4.2%)

□ 유기기구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현황

○ (유기기구) 시설당 평균 4.5개 설치

계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검사 대상
	미니 자동차	미니 기차	배터 리카	기타	회전 목마	기타 (코인라이더)		트램 펄린	에어 바운스	기타	
4,080	393 (9.6%)	297 (7.3%)	116 (2.8%)	85 (2.1%)	207 (5.1%)	419 (10.3%)	38 (0.9%)	1,495 (36.6%)	208 (5.1%)	673 (16.5%)	149 (3.7%)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당 평균 2.3개 설치

총계	미끄럼틀	조합 놀이대	폐쇄형 기구	정글짐	회전놀 이기구	흔들놀 이기구	오르는 기구	기타
1,370	282 (20.6%)	247 (18.0%)	236 (17.2%)	171 (12.5%)	79 (5.8%)	50 (3.6%)	38 (2.8%)	267 (19.5%)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시행규칙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3]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9.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사설은 제외한다.
10.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14. 3.24 개정 완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운동시설

가.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위락시설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